

의안번호	2214485
의 퇴 인	윤재옥의원
회 답 일	2026.2.10.
추계번호	25D6366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경찰청에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17개 시·도에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총 22억 8,000만원(연평균 4억 5,6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안 제5조)	48	48	48	48	48	240	48
지역 범죄예방 지역협의체 (안 제6조)	408	408	408	408	408	2,040	408
합계	456	456	456	456	456	2,280	456

주: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범죄예방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협의체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6조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계기관,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7조 (범죄예방진단)	시·도경찰청장 등은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으로부터 범죄예방디자인 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8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9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안 제10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시·도경찰청장 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1조제2항 (범죄예방정보의 관리)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3조 (범죄 예보·경보)	경찰청장은 연쇄 살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등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4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6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7조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	-
2	안 제6조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	○	-
3	안 제7조 (범죄예방진단)	X	범죄예방진단 관련 신규 인력 증원 여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4	안 제8조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X	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 관련 신규 인력 증원 여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5	안 제9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안 제10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조치)	X	경찰청은 이미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라 지정 건수의 증가 규모,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6	안 제11조제2항 (범죄예방정보의 관리)	X	경찰청은 범죄통계시스템, 수사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제정안에 따라 기존시스템의 연계, 고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스템 연계의 범위, 고도화의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7	안 제13조 (범죄 예보·경보)	X	기존 유사한 예·경보 시스템(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등)의 활용 여부, 신규 개발시 예·경보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8	안 제14조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X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신규 인력 증원 여부, 인증기관 지정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9	안 제16조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X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은 일부 수행 중이나 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연구내용 및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10	안 제17조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X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선정 기준, 각 대상별 보조할 사업과 보조금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경찰청의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17개 시·도의 범죄예방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한하여 추계
-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찰청의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
 - 경찰청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와 상설협의체를 운영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안 제5조)

- 본 추계에서는 경찰청에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를 설치하고 연간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부와 경찰청의 상설협의체 운영 예산은 회의개최 1회당 1,200만원¹⁾이고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경찰청에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4,800만원으로 예상됨

[표 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7~2031년

(단위: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협의체 개최 횟수(a)	4	4	4	4	4
1회당 비용(b)	12	12	12	12	12
추가재정소요(=a×b)	48	48	48	48	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경찰청의 사업설명자료 2-1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 예산으로 2024년부터 1회당 1,200만원, 연 4회로 4,800만원 편성

나.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안 제6조)

- 본 추계에서는 17개 시·도에 범죄예방 지역협의체를 설치하고 연간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부와 경찰청의 상설협의체 운영 예산은 회의개최 1회당 1,200만원²⁾이고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17개 시·도에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4억 800만원으로 예상됨

[표 3]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7~2031년

(단위: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협의체 개최 횟수(a)	2	2	2	2	2
1회당 비용(b)	12	12	12	12	12
추가재정소요 (=17개 시·도×a×b)	408	408	408	408	4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경찰청에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17개 시·도에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4억 5,600만원씩 향후 5년 동안 총 22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48	48	48	48	48	240	48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	408	408	408	408	408	2,040	408
합계	456	456	456	456	456	2,280	4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경찰청의 사업설명자료 2-1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 예산으로 2024년부터 1회당 1,200만원, 연 4회로 4,800만원 편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 등에 한하여 경찰청의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